

구제역 방역 추진현황과 재발방지 대책

임 경 중 방역과장
국립수의과학검역원

1. '02년 구제역 발생개요

가. 구제역 의심축 신고 및 검사현황 총괄(5. 2~8. 14현재)

※'02. 6. 23일 안성시 일죽면 소재 신흥농장의 마지막 발생이후 추가 발생 없음

나. '02년 구제역 발생양상 분석

○5. 2~6. 23일(53일간) 사이에 경기 안성·용인 및 평택, 충북 진천 4개 시·군의 16농가(소 1, 돼지 15)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음

- 지역별 발생건수 : 경기 안성 9건·용인 4건·평택 1건, 충북 진천 2건

○처음 발생이후 2차·3차 발생시기는 8일 내외의 발생주기를 보이다가 5. 20일 이후에는 3~14일 간격을 두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음

- 1차 발생 2건(5. 2~5. 3) → 2차 발생 6건(5. 10~5. 12) → 3차 발생 4건(5. 18~5. 19) → 4차 발생 4건(6. 2~6. 23 : 산발적 발생)

○최초 발생농장(울곡농장) 중심 10km내 이동제한지역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(13건)하였고, 10km 밖에서 3건(평택 1, 충북 진천 2)이

발생하였음

※ 2000년도에는 소 사육 15개 농가(한우 13농가, 젃소 2농가)의 81두(한우 62두, 젃소 19두)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음

2. 구제역 긴급방역 추진사항

가. 구제역 비상방역체제로 전환운영

■ 비상방역대책상황실 운영

○5. 2일 처음 신고 이후 구제역 비상방역체제로 전환 운영

○24시간 비상근무 체제 운영

- 농림기관, 단체에 비상 3호가 발령되어 비상근무(7. 23일 해제)

■ 구제역 진단 신속 수행

○구제역 의심축 신고 가축에 대하여는 24~48시간내 검사완료 추진으로 신속 방역추진

○5. 9일부터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구제역 신속 간이진단키트로 현장에서 20분이내 신속한 진단으로 초동방역 조치

■ 중앙가축방역관의 현지 파견 방역지원

○중앙가축방역관을 발생농장별로 현지에 파견하여 살처분, 소독, 사후관리 요령 등 방



역기술 지도

○ 현장 방역지원 인력(5. 2~7. 20) : 1,727명

나. 발생지역 방역조치 강화

■ 발생농가(인근농가 포함)에 대한 방역조치

○ 발생농가 및 인근농가 사육 가축의 신속한 살처분 실시(73농가, 97천여두)

- 5. 9일부터 구제역 간이진단키트 현장 적용으로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

○ 통제초소 관리 및 축사내·외, 진입로, 매몰지 등에 대한 소독실시(소독차량 지원 및 소독약 공급)

■ 발생농가 인근지역에 대한 방역조치

○ 위험지역(반경 3km 이내) 및 경계지역(반경 3~10km 사이)의 방역대 설정운영

○ 이동제한지역 내외에 68~131개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여 민·관·군경 합동으로 불법 이동가축 감시,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 등 24시간 근무 실시

■ 전파 방지를 위한 예방적 방역활동 강화

○ 가축방역중앙협의회 협의결과(5. 12)에

의거 3km내의 구제역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돼지 등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 실시(73농가, 63천여두)

○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 전담 방역관을 배치하여 특별임상관찰 및 전화예찰 실시(5. 17일부터)

○ 안성 일주 신흥농장 발생에 따른 특별조치
- 검역원장의 현지 상주 소독실시요령 등 현장 방역지도 실시

- 안성·이천간 331번 지방도로 폐쇄(6. 25)

- 구제역 발생농가 및 인근농가, 예방 살처분 농가, 이동통제 초소에 대하여 중앙가축방역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방역지도 실시

- 소독차량 2대를 현지 상주 배치시켜 발생농가 및 인근농가, 3km내의 주변도로 소독 실시(6. 25~7. 14)

○ 수매가축 가공장 종사자에 대한 림프절 제거교육, 지정도축장에 대한 소독요령 지도 등으로 수매가축 방역관리 강화(5.29~6.14 : 8명)

○ 구제역 예방약 비상용 70만두분 긴급구매(기존 비축분 30만두분 포함 100만두분 확보)

다.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추진 및 종식선언

■ 이동제한 해제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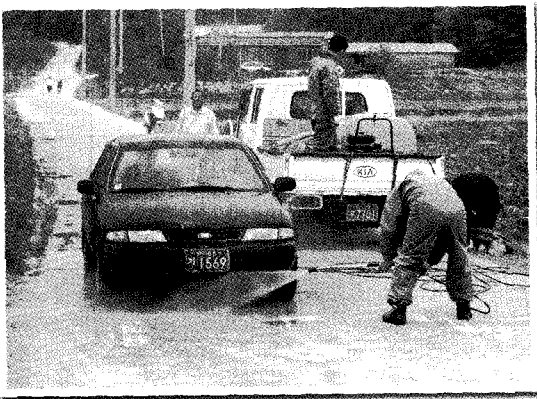
- 충북 진천지역(위험지역 기준) : 6. 24
- 경기 평택지역(위험지역 기준) : 7. 19
- 경기 안성·용인지역
 - 안성 보개·용인 원삼지역(경계지역) : 7. 24
 - 안성 일죽 신흥농장 중심 3~10km 사이(경계지역) : 7. 28
 - 안성 일죽 신흥농장 중심 3km이내(위험지역) : 8. 7

■ 구제역 종식선언

○'02년 국내 발생한 구제역의 종식선언 : '02. 8. 14

라. 역학조사 중간결과

○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원발농장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유전자 분석결과 Pan Asia O₁형으로 확인되는 등 동북아시아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, 해외 여행객 등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유입 가능 요인에 대하여 계속 조사중에 있음



○구제역 원발농장에서 인근농장으로의 전파경로는 돼지의 이동에 의한 직접 전파는 한 건도 없었으며, 대부분이 사람 등에 의한 기계적인 전파로 추정

3. 청정국 지위획득 추진 일정

■ 살처분 정책 및 혈청학적 예찰 수행시 청정국 인증신청 자격요건

○구제역 마지막 발생 후 3개월 동안 발생이 없으면 청정국 인증 신청이 가능함

■ 청정국 지위획득 추진 일정

○구제역 마지막 발생이 '02. 6. 23일이므로 9. 24일까지 추가 발생이 없으면 청정국 자격요건을 갖추게 됨

○'02. 10월에 구제역 청정국 인증신청 보고서 제출(OIE)

○'02. 11월말에 OIE "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"의 심의를 거쳐 구제역 청정국 지위 복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

4. 재발방지 대책

가. 구제역 발생지역 사후관리 강화

■ 구제역 발생지역 사후관리실태 주기적 점검 및 방역조치 보완

○구제역 발생농장 등 살처분 농가 사후관리 실태 주기적 점검 실시

○전국적 구제역 청정성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 강화

- (당초) : 23천두(농장사육 가축 검사) → (추가) : 30천두(도축장 출하 가축 검사)

○역학조사에 의한 고위험 농가 혈청검사(목적예찰) 지속 실시

- 발생농장 입식시험 추진
 - 입식시험 대상농장 : 발생농장 등 임상증상 확인농장
 - 입식시험 시기 및 기간 : 이동제한 해제 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입식시험이 가능하며, 60일간 입식시험 실시

나. 평산시 구제역 유입 방지대책

■ 구제역 발생국 여행객 등 사람 방역관리 강화

- 축산관련단체 주관으로 구제역 발생국 축산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 및 입국시 특별검역 실시 (축산관련단체 적극 협조 필요)

○ 해외 여행객 인솔자 교육강화

○ 구제역 발생국 여행객 집중 검색실시

■ 공·항만에서의 검역·검색 및 소독강화

○ 공·항만 탐지견 투입 확대 : (현재) 6두 → ('02. 연내) 12두

○ 공·항만 여행자 발판 소독조(310개) 관리 강화 및 운용철저

○ 구제역 발생국 여행객의 골프화·골프채, 중고농기계 등에 대한 소독철저

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으로 밀수단속 및 피항선박 소독 등 강화

○ 입국장에서 X-ray 검색 강화

○ 동·축산물 밀수단속 및 피항·나포선박 소독 강화

○ 선·기내식의 남은 음식물 안전처리 관리감독 강화(수시 → 주 1회 이상)

■ 수입 조사료 소독 등 검역 강화

○ 수입위생조건 준수여부 확인 철저 및 현물검사 강화

○ 국내 도착시 신속히 소독실시(수입 후 2일 이내 → 당일)

■ 국경검역 홍보활동 강화

○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시 검역 안내문 배포(현지 언어로 제작 배포)

○ 공·항만에서 휴대 육류 반입금지 등 지속적 홍보실시

○ 축산관련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검역홍보 실시

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구제역 발생농장 등 살처분 농가의 사후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, 전국적 구제역 청정성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를 강화하는 등 구제역 발생지역의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. 또한 구제역 발생국 여행객 등의 사람 방역관리 강화와 공·항만에서의 검역·검색 및 소독강화,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으로 밀수단속 및 피항선박 소독 강화 등의 평산시 구제역 유입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.

다. 평산시 구제역 국내 방역 계획

■ 구제역 유입 가능 위험농가 관리 철저

○ 축산관련단체 회원농가의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여행사는 시·군에 사전통보(시·군에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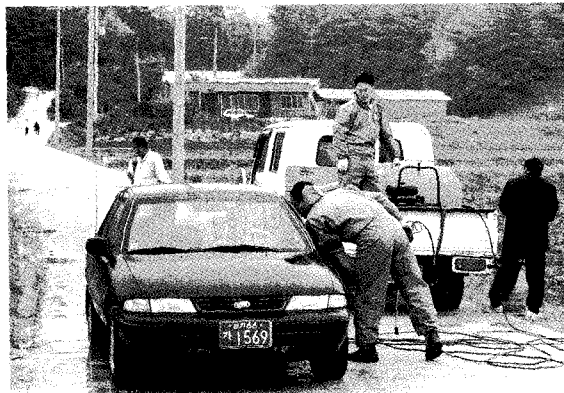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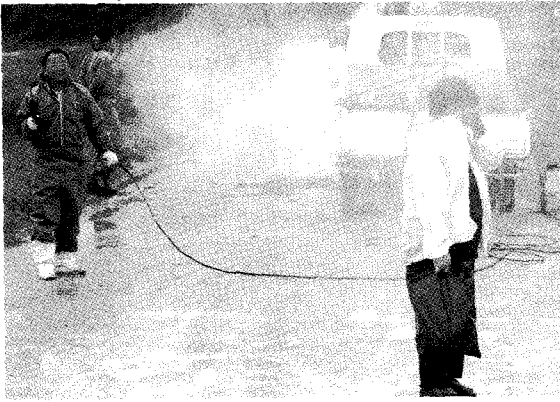
교육실시)

○ 농장주가 외국인 고용시 시·군에 신고토록 하고 교육·홍보(512명, '02.7.1 현재)

■ 농장 출입차량 등 방역관리 철저

○ 사료제조업자·검정기관·종축장·부하장과 동물약품·사료·집유·분뇨 운송차량에 대한 소독의무 부여

○ 차량에 소독기구 장착 의무화, 차량 보유회사에서 주 1회 이상 운전자 교육실시(가축



전염병예방방법 개정시까지 계도 실시)

■ 농가의 자율방역 강화

○농장에 출입통제 시설·소독기구 등 설치 유도

○농장주·관리인에 대한 특별방역교육 실시(8~9월)

- 시·군, 가축위생시험소, 농업기술센터 및 양돈협회 등 기관·단체별 역할분담 실시

■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내실화

○소독의 날 시행변경 : (현행) 년 27회 → (개선) 매주 실시

○구제역특별대책기간 변경 : (현행) 2~4월 → (변경) 3~5월

- 발생지역 및 주변 시·군은 수시로 자발적 소독 실시

■ 공동방제단 운용개선

○공동방제단 정예화 : (현행) 10,355개소 →

(개선) 축소, 정예화

- 읍·면장이 소규모 농가 방제단 재편성 및 운영하고, 방역비를 지급하는 등 지휘체계 강화

○지원대상 확대 : (현행) 소 10두, 돼지 100두 미만 → (개선) 소 10두, 돼지 300두 미만

■ 구제역 발생지역 등 방역 취약지역 선정 집중관리

○방역취약 우려지역 29개소(구제역 11, 돼지콜레라 18) 집중관리

○시·군 단위의 가축질병방역대책 수립·추진(자체 취약농가 선정 집중관리)

※농림부, 검역원에서 『전국 일제 소독의 날』 등에 소독실태 지속점검

라. 법령·규정·SOP 개정추진

○농가의 자율방역 의무규정 신설, 민간방역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,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의무부여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추진

○구제역 방역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을 보완추진

○질병관리,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 등록제 도입추진 **양돈**

